

보험금과 방화

송재철
<화재원인조사 전문가>

최고 의 악질적인 방화범 죄로서 생명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해 언니의 가족 3명이 잠든 틈에 석유를 뿌려 태워 죽인 악덕 여인의 방화 이야기가 있다.

김말순(가명, 48세) 여인은 형부인 이성철(가명, 67세)씨의 가족 3명의 명의로 1,700 만원 짜리 생명보험을 B생명 보험회사 등 3개 회사에 본인들 모르게 몰래 들어 놓고 3개월간 보험금을 불입하다가 형부의 조부 제삿날 참례하여 같이 지내는 척 하다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석유를 이부자리에 붓고 불을 질러 형부인 이성철과 여조카 등 3명을 모두 불태워 죽인뒤 입대중인 형부의 상속자인 이영진(가명)의 인감을 만들어 보험금을 타냈다.

조금은 오래된 사건이지만 너무나 엄청나고 끔직한 수법의 살인 사건이라 한번 더 기억하고 넘어 가야 할 일로 생각된다.

1970년대 초 1월말 한밤중 시골 외진 곳에서 일어난 화재로서 처음에는 중실화사건으로 잘못 처리되고 있던 것이 군복무중에 있던 큰 조카 이영진이 제대하여 어머니 명의의 생명보험금 1,700만원을 이모가 수령했다는 사실을 알게됨으로써 사건의 전모가 벗겨지기 시작한 것이다.

김말순은 K시에서 내연의 남편과 동거중이었으나 이 사실이 완

전히 밝혀질 때인 2년후인 9월 중순에는 절도죄로 구속송치된 상태에서 추가 입건되었다.

김말순은 이 화재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10월말에도 자기집에서 같은 K시에서 혼자사는 의사매인 강영순(가명, 37세)이 대학병원으로 옮겨간 일이 있는데 당시 강영순은 환거품을 토하는 중태로써 결국 입원 다음날 사망한 일이 있었다. 병원측에서는 사체를 해부하여 사인을 규명한 뒤 유족에게 사체를 인도코자 하였으나 오히려 김말순은 의사를 설득해서 4일뒤 사체를 인도받아 화장시켜 버렸다.

김말순은 강영순씨의 명의로 500만원짜리 생명보험 1구좌를가입하고 월보험료 58,920원짜리 7개월, 200만원짜리 1구좌 월보험료 10,640원 2개월을 불입한 뒤어서 강영순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신청을 하였으나 사인불명으로 500만원짜리는 환급금 229,630원만 수령하고 200만원 짜리는 자동소명된 일도 있었음이 밝혀졌다.

사실 이때부터 김말순은 언니가 죽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사취할 것을 구상한 것이고 일단은 불을 질러 성공하자, 자신을 일어 다음 해 10월 K시에 사는 시동생 장영길(가명, 35세로 내연의 남편 동생)을 독살한 것이다.

역시 장영길도 B생명보험 등에

4, 400만원짜리 보험이 계약 되었고 6회에 93만원이 불입된 상태였는데 형수가 다방에서 부르는 바람에 나와 우유 한잔을 시켜 놓고 한눈파는 사이에 넣은 청산가리를 마시고 죽은 것이다.

김말순은 독을 마시고 신음중인 장영길을 인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입원시켰으나 5시간뒤 죽자 상속권자가 되는 동서로 하여금 보험금 400만원을 타 준다고 인감증을 받아 4, 4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코자 하였으나 보험회사의 실사과정에서 보험계약이 4,400만원임이 동서에게 탄로되어 시비가 되고 보험금을 찾지 못하고 있던 차에 화재사건이 방화살인으로 구증됨으로써 살인의 수단과 증거인멸, 그리고 보험금의 사취를 위해 방화를 선택해 범죄를 일시에 성사시키려 했던 악질범죄자의 죄상이 밝혀지게 되었던 것이다.

김영길(가명, 28세)은 이선자(가명, 27세)여인과 8년전에 결혼하여 7살난 남자아이 하나를 가진 가장으로 1년전 아랍에서 모 건설회사의 중장비 기술자로 근무하다가 귀국했다.

김영길은 해외근무중 송금한 돈 중에서 소비부분이 분명하지 않는 80만원을 처가 부정하게 썼을 것이라고 판단해버려 처를 살해할 마음으로 시내로 불러내어 영화관편을 같이 구경하고 약방에 들러 메틸알콜 한병을 사 넣은 뒤

처와 함께 여관으로 들어가 마지막 잠을 같이 한 후, 처의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이불을 덮어 써운 다음 알콜을 뿐만 아니라 불을 지른 후 도주하였으나 바닥에 놓여진 사체가 그렇게 쉽사리 타는 것이 아니어서

평소 정사장이 점포내 책상서랍에 통장과 도장을 넣어두는 것을 주시해 두었다가 이것을 훔쳐 돈을 꺼내 쓰기 위해 들어가 절취한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임이 밝혀졌다.

조기사는 봄인 4월초에 정사장

은행이 착오로 후심료 5,400원을 받지 못한 것이 조기사를 검거케 된 단서가 되었던 것이다.

A은행 B지점은 K시 지점에서 예금주인 정사장에게 추심료를 받아 달라고 전화통보를 했고 A은행 K지점은 예금주인 정사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던 것이다. 불로 모든 것이 소실된 것으로 알고 있던 정사장은 누군가가 통장을 절취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직감하고 신고함으로써 조사는 급진전되면서 예금지급청구서에 기재된 필적을 토대로 가구점의 전·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끝에 조기사로 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인출액 500만원 중 쓰고 남은 400만원을 조기사의 집 안방 장동 밑에서 찾아 압수해 일단락 지었다.



사망자의 신원이 쉽게 밝혀지게 되었고 아울러 남편인 김영길의 행적과 전술의 모순점이 집중 추궁됨으로써 죄상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처럼 살인후 증거를 인멸시키기 위해 방화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1985년 가을 새벽 03시 30분경, 조그만 도시인 K시의 S가구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5,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일이 있다.

이 화재는 다음날 가구점 주인 정하운(가명, 38세)의 운전사로 근무했던 조기석(가명, 25세) 씨가

의 운전사로 고용되었다가 5월말 경 사장과 감정이 나빠져 사직한 뒤 일정한 직업없이 놀고 있다가 평소 정사장이 통장과 도장을 넣어두는 곳을 상기하고 화재당일 새벽에 S가구점에 몰래 들어가 정사장 명의의 A은행 K지점발행 온라인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뒤 책상위에 있던 장부와 메모지들을 쌓아 놓고 불을 질렀던 것이다.

조기사는 날이 밝자 훔친 정사장의 통장과 인장을 가지고 인근 B시에 A은행지점에서 정사장 명의로 500만원을 인출했는데 이때

※ 지난호 원고 내용중 표현에 오류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46쪽 중앙아래서 4째줄>

‘모든 화재사건이 그렇지만 특히 증거확보를 위한 현장검증이 어렵고 뚜렷한 용의자 없이 불특정 다수인중 범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검거가 어렵다.’ ⇒

‘증거 확보가 어려워 현장검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쇄 방화사건도 일체 현장에 유류된 범증을 찾기 힘들고 대상도 불특정한 것이 더욱 검거의 난관인 점이다.’ ◎◎